	(■ 국민	, 🗆 공무원)	자체우-	수제안 추	천서				
제안제목	- ' '	정보시스템(K-ap 업체가 등록(5						소에서	
주 제안자	성 명		생년월일						
	소속과 직급 (공무원인 경우)			기여도(%)					
	전화번호 (휴대전화)			전자우편주소					
공동 제안자	성 명	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(공무원인			경우) 기여도(%)				
제 안 개요	제안 분야	[■] 일반행정, [] 재정경제, [] 보건복지, [] 사회문화							
	현황과 문제점	관리사무소에 입찰참여 업체의 수를 아는 경우 이를 악용하여 특정업체에 알려주고 고의적 유찰 유도							
		이 이후, 수의계약 대상의 조건을 만든 후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투명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비 집행 우려							
	개선방안	o 수요기관(아파트 관리사무소)에 참여 업체 갯수를 마감 후 확인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							
자체 심사 결과	추천의견								
「제안 규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.									
					2022	년	월	일	
행정기관의 장 직인									
행정안전부장관 귀하									
※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									
점부서류 1.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. 그 밖의 참고자료									

추천제안 심사안건 요약서

연번	제안명	제안 및 실시내용(실시계획)				
2	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(K-apt)의 입찰참여업체 노출되지 않게 정비 등	 < 제안내용> 장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참여업체 수 노출되지 않게 정비 -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)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, 관리사무소에 입찰참여 업체의 수를 아는 경우 이를 악용하여 입찰참여 업체수를 특정업체에 알려주고 고의적 유찰 유도 - 이후 2회 이상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 대상의 조건을 만든 후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집행 우려 (일찰정보) 관리사무소 - 입찰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집행 우려 (실찰정보) 관리사무소 > 상은 관리비 집행 우려 (보찰업체) (보찰업체) 관리사무소 그 교육적 용접 + 소문기록(S) 두명한 관리비 조 (보찰업체) 무형업 관리비 조 ○ 「주택관리업자 및 자업자 선정지침」 개정 추진(21.10) -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·용역 사업자 입찰시 적격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, 신규사업자의 입찰참여를 확대 등 종합적 개정 * 주요 개정사항 ① 적격심사의 전자입찰 도입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① 제한경쟁 사업실적 인정범위 확대(3년→5년) 등				
참고	제안하게 된 사연 (아이디어 발상 계기, 당시 상황등) 제안 종류	② 제한경쟁 사업실적 인정범위 확대(3년→5년) 등 ○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) 시스템을 통한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찰업체간의 유착 금지 제도 마련 필요				
	제안 종류 (일반)					